

변호사 자문 협약서

위임인(이하 “갑” 이라 함)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수임인(이하 “을” 이라 함) 김태운 법률사무소

제1조 【 목적 】 본 협약은 ‘갑’ 이 ‘을’ 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을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위임대상 】 ‘갑’ 은 ‘을’ 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고 ‘을’ 은 이를 수임한다.

1. ‘갑’ 의 법률상의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하여, ‘을’ 은 상담 및 업무질의를 응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갑’ 의 개별적 위임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는 일
2. ‘갑’ 이 제3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갑’ 의 요구에 응하여 조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3. ‘갑’ 의 소송을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는 일
4. ‘갑’ 의 경영과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에 협력하는 일

제3조 【 질의 및 답변 방법 】 ‘갑’ 은 ‘을’ 에게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을’ 은 ‘갑’ 이 요청한 시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다.

제4조 【 의무사항 】 ① ‘을’ 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갑에 관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 은 법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령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송달문서는 수령 즉시 ‘갑’ 에게 전달 또는 통지한다.

③ ‘을’ 은 위임사항의 착수 또는 진행중에 지득한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 모든 사실은 지체없이 사전에 ‘갑’ 에게 통지한다.

④ ‘을’ 은 ‘갑’ 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해충돌의 염려 등이 없어 갑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을’ 은 복대리 등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5조 【 손해배상책임 】 ‘을’ 은 ‘갑’ 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갑’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한다.

제6조 【보수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자문료로서 월정액 금 오십만원 (₩500,000, 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제세금과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을’의 청구를 받은 후 7일 이내 ‘갑’에게 미리 신고한 ‘을’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다.

② ‘갑’의 위임 또는 자문내용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 특정업무의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갑’이 ‘을’에게 민·형사 기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한 사건을 위임한 때에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7조 【보정사항 등】 ‘갑’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을’이 수행하는 경우 소송상대방의 주소 보정 및 기타 보정사항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증거자료 제출 등】 ‘갑’은 ‘을’이 요청하는 증거자료를 적기에 교부하여 소송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을’은 변론기일 등에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령한 준비서면 등의 사본과 진행내용을 ‘갑’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기로 한다.

제9조 【승소확정시 조치사항】 ① ‘을’은 승소확정시 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별도교부 요청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득한 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10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2017.1.1 부터 2017.12.31 까지로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기금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상호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재협약의 체결】 제10조에서 정한 협약의 효력기간 종료시 ‘을’의 요청이 없거나, 협약기간 중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자문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①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②본 협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 분쟁의 소송관할법원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으로 한다.

2017년 월 일

위 임 인 (갑)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종로6가)

성 명 : 대표이사 이 근 (印)

수 임 인 (을) 주 소 :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503호

성 명 : 변호사 김 태 윤 (印)